

도로 표준폭원 기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 관련규정

○ 도로법제37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목적

○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기준(횡단폭원등)을 자치단체별로 달리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도로계획의 일관성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으로 설정코자함.

※ 산지부 등 지형여건에 따라 조정계획 할 수 있음

□ 지방도로 표준폭원 기준

○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보조간선도로 (설계속도 70~80km/h) : 4차로 16.5~20.0m (교량 17.5~21.0m)
- 집 산 도 로 (" 60km/h) : 2차로 9.5~10.0m (교량 10.5~11.0m)

○ 군도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 집 산 도 로 (설계속도 50km/h) : 2차로 8.5m (교량 9.5m)

○ 농어촌도로(국지도로)

- 면 도 (설계속도 50km/h) : 2차로 8.0m (교량 9.0m)
- 리 도 (" 40km/h) : 1차로 6.5m (" 7.5m)
- 농 도 (" 20km/h) : 1차로 4.0m (" 5.0m)

도로의 구분 및 설계기준

● 도로의 구분

1)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구분

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비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2)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구분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설계속도(km/hr)			도시지역	비고
		평지부	구릉지	산지부		
주간선도로	국도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70	60	50	60	
집산도로	지방도 또는 군도	60	50	40	50	
국지도로	군도	50	40	40	40	

● 횡단폭원 구성

- 차로폭

구분		설계속도 (km/hr)	차로최소폭 (m)	소형차도로
지방부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이상	3.50	3.25
	보조간선, 집산도로	60이상~80미만	3.25	3.0
	집산도로, 국지도로	60 미만	3.00	3.0

- 중앙분리대

-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값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미터)
지방지역	고속도로	3.0
	일반도로	1.5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2.0
	일반도로	1.0

-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경우 각 노면표시의 중심간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 길어깨

구분		설계속도 (km/hr)	최소폭원(m)		소형차도로 최소폭(m)
			길어깨	측대	길어깨
지방부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이상	2.00	0.50	1.00
	보조간선, 집산도로	60이상~80미만	1.50	0.25	0.75
	집산도로, 국지도로	60 미만	1.00	0.25	0.75

- 측대

도로의 구분		측대 최소폭(m)	비고
설계속도(km/hr)	80 이상	0.50	
	80 미만	0.25	

- 보호길어깨

- 성토구간에서 포장구조체와 노체를 보호하고 다이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폭원으로 횡단유효 폭원에서 제외되며 성토구간에서 도로 연단에 0.5m씩 보호길어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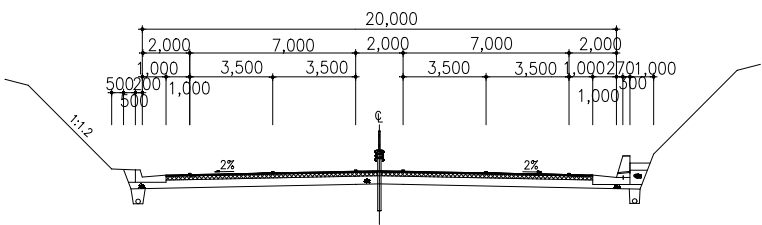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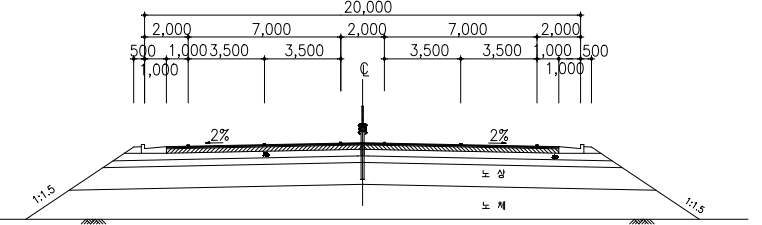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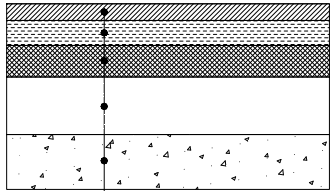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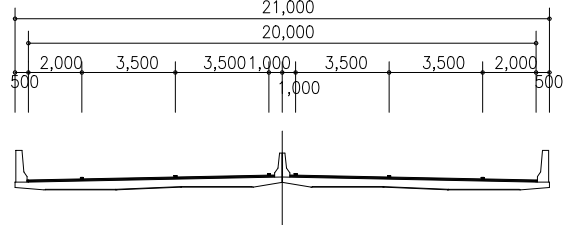
● 놓여준 도로설계 기준

(단위 : m)

구분	지형	설계속도(km/h)	차로수	차도폭	길어깨(보도 미설치)	도로폭	비고
면도	평지	50	2	6.0	1.0	8.0	
	산지	40	2	6.0	1.0	8.0	
리도		40	1	5.0	0.75	6.5	
농도		20	1	3.0	0.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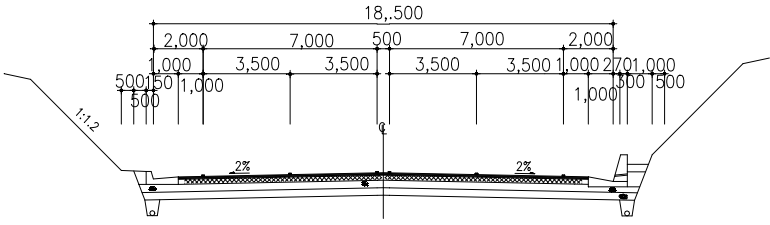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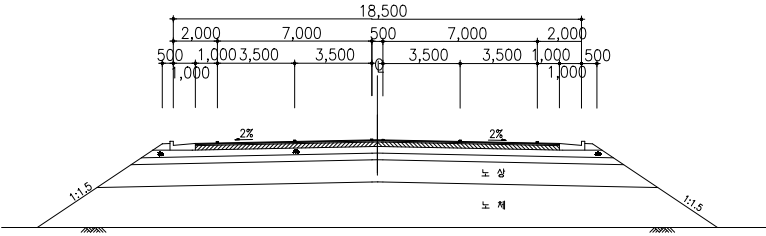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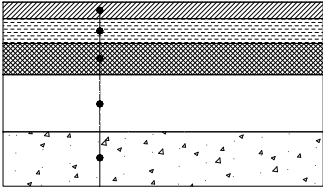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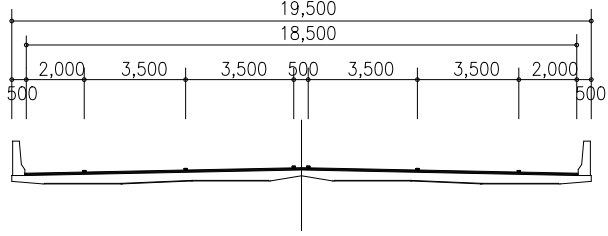
◆ 지방도 : 보조 간선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 설계속도 : 평지부 - 80km/hr, 구릉지 - 70km/hr, 산지 - 6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5m 이상 - 길 어 깨 : 2.0m 이상 - 중앙분리대 : 2.0m 이상 - 측 대 : 0.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280m ○ 최대종단경사 : 4%(7%)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장두께		 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상방지층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중 간 층 : 6cm(교통량에 따라 적용)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2회 포설)
횡단구성		• 총 폭 원 : 20.0m • 차 도 : 4@3.5=14.0m • 길 어 깨 : 2@2.0=4.0m • 중앙분리대 : 2.0m	

◆ 지방도 : 보조간선도로 (중앙분리대 미설치)

◆ 설계속도 : 평지부 - 80km/hr, 구릉지 - 70km/hr, 산지 - 6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5m 이상 - 길 어 개 : 2.0m 이상 - 중앙분리대 : 0.5m 이상(노면표시) - 측 대 : 0.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280m ○ 최대종단경사 : 4%(7%)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장두께		 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상방지층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중 간 층 : 6cm(교통량에 따라 적용)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2회 포설)
횡단구성		• 총 폭 원 : 18.5m • 차 도 : 4@3.5=14.0m • 길 어 개 : 2@2.0=4.0m • 중앙분리대 : 0.5m(노면표시)	

◆ 지방도 : 보조간선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 설계속도 : 평지부 - 70km/hr, 구릉지 - 60km/hr, 산지 - 5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25m 이상 - 길 어 개 : 1.5m 이상 - 중앙분리대 : 1.5m 이상 - 측 대 : 0.2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200m ○ 최대종단경사 : 5%(7%)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장두께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중 간 층 : 6cm(교통량에 따라 적용)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2회 포설)
형단구성		• 총 폭 원 : 17.5m • 차 도 : 4@3.25=13.0m • 길 어 개 : 2@1.5=3.0m • 중앙분리대 :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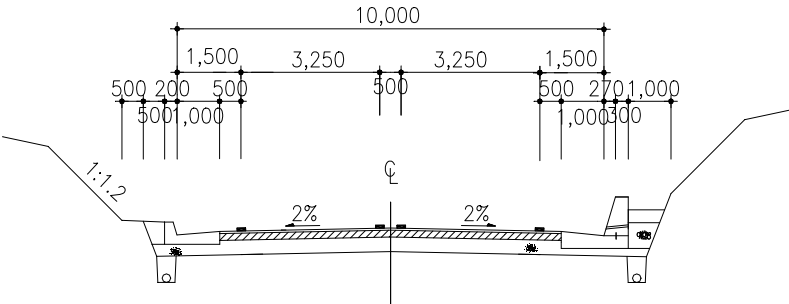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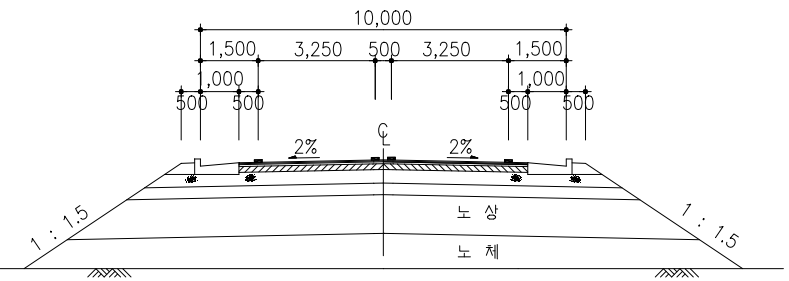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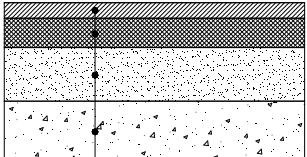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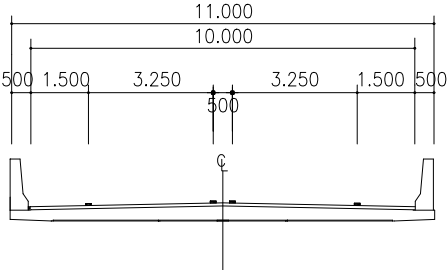
◆ 지방도 : 보조간선도로 (중앙분리대 미설치)

◆ 설계속도 : 평지부 - 70km/hr, 구릉지 - 60km/hr, 산지지 - 5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25m 이상 - 길 어 개 : 1.5m 이상 - 중앙분리대 : 0.5m 이상(노면표시) - 측 대 : 0.2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200m ○ 최대종단경사 : 5%(7%)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 장 두 겹		<table><tr><td>표</td><td>층</td></tr><tr><td>중</td><td>간</td><td>층</td></tr><tr><td>기</td><td>층</td></tr><tr><td>보</td><td>조</td><td>기</td><td>층</td></tr><tr><td colspan="4">동상방지층</td></tr></table>	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상방지층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중 간 층 : 6cm(교통량에 따라 적용)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상방지층																		
교 량 폭 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2회 포설)															
횡 단 구 성		• 총 폭 원 : 16.5m • 차 도 : 4@3.25=13.0m • 길 어 개 : 2@1.5=3.0m • 중앙분리대 : 0.5m(노면표시)																

◆ 지방도 : 집산도로 (2차로)

◆ 설계속도 : 평지부 - 60km/hr, 구릉지 - 50km/hr, 산지 - 4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25m 이상 - 길 어 개 : 1.5m 이상 - 중앙분리대 : 0.5m 이상(2줄 노면표시) - 측 대 : 0.2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140m ○ 최대종단경사 : 7%(10%)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장두께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 (2회 포설)
형 단 구성		• 총 폭 원 : 10.0m • 차 도 : 2@3.25=6.5m • 길 어 개 : 2@ 1.5=3.0m • 중앙분리대 : 0.5m(노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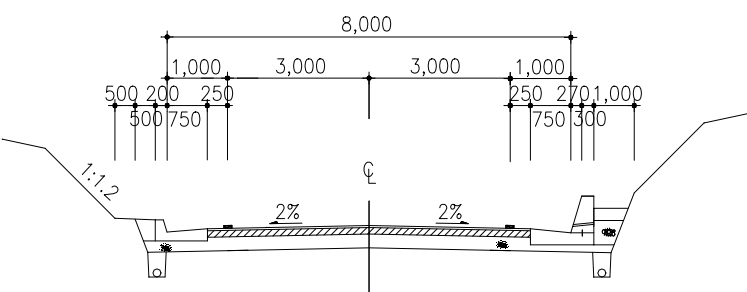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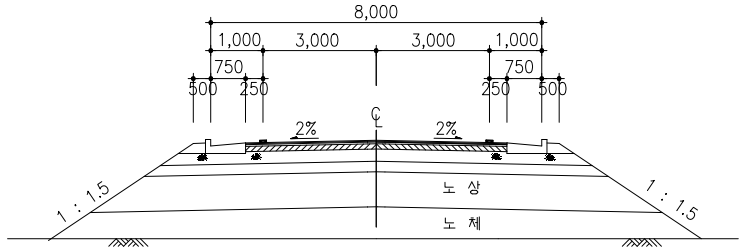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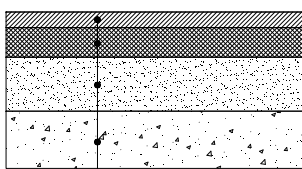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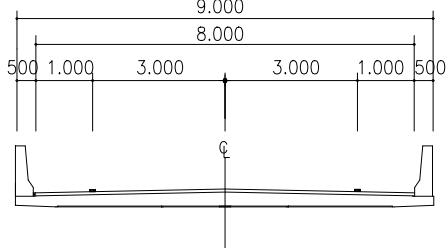
◆ 지방도 : 집산도로 (2차로 현행)

◆ 설계속도 : 평지부 - 60km/hr, 구릉지 - 50km/hr, 산지 - 4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25m 이상 - 길 어 개 : 1.5m 이상 - 중앙분리대 : 노면표시 - 측 대 : 0.2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140m ○ 최대종단경사 : 7%(10%)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장두께		<table><tr><td>표</td><td>층</td></tr><tr><td>기</td><td>층</td></tr><tr><td>보 조 기</td><td>층</td></tr><tr><td>동상방지</td><td>층</td></tr></table>	표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상방지	층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표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상방지	층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 (2회 포설)								
횡단구성		• 총 폭 원 : 9.5m • 차 도 : 2@3.25=6.5m • 길 어 개 : 2@ 1.5=3.0m • 중앙분리대 : -									

◆ 군 도 : 국지도로

◆ 설계속도 : 평지부 - 50km/hr, 구릉지 - 40km/hr, 산지 - 4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0m 이상 - 길 어 개 : 1.0m 이상 - 중앙분리대 : 노면표시 중앙선 두줄표기시 간격 0.5m이상 - 측 대 : 0.2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90m ○ 최대종단경사 : 7%(14%)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장두께		 <table data-bbox="612 1420 770 1532"><tr><td>표</td><td>층</td></tr><tr><td>기</td><td>층</td></tr><tr><td>보</td><td>조 기 층</td></tr><tr><td>동</td><td>상 방 지 층</td></tr></table>	표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	상 방 지 층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표	층										
기	층										
보	조 기 층										
동	상 방 지 층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 (2회 포설)								
형 단 구 성		• 총 폭 원 : 8.0m • 차 도 : 2@3.0=6.0m • 길 어 개 : 2@1.0=2.0m • 중앙분리대 : 노면표시 * 중앙선 두줄 표기시 간격 0.5m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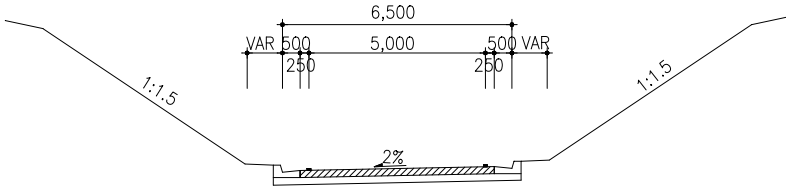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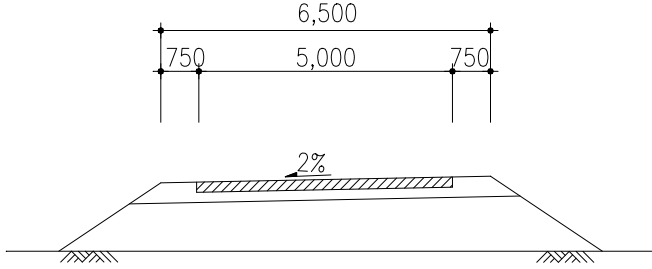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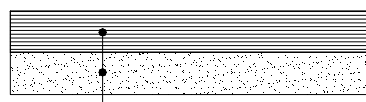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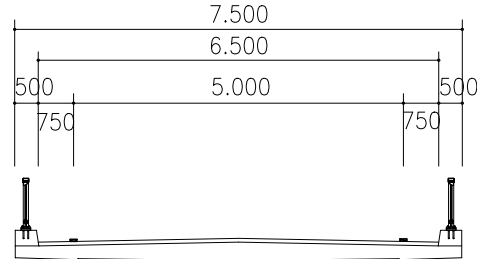
◆ 면 도

◆ 설계속도 : 평지부 - 50km/hr, 구릉지 - 40km/hr, 산지 - 4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로 폭 : 3.0m 이상 - 길 어 개 : 1.0m 이상 - 중앙분리대 : - - 측 대 : 0.25m 이상 ○ 설계기준차량 : 대형자동차 또는 소형 자동차 ○ 최소곡선반경 : 90m ○ 최대종단경사 : 7%(14%) ○ 사 면 경 사 - 쌓기경사 • 5m 이하 : 1:1.5 • 5m 초과 : 1:1.8 • 쌓기 높이 H=5m마다 소단 1.0m설치 - 깎기경사 • 토 사 1:1.2 (H<5.0m) • 1:1.5 (H>5.0m) • 리핑암 1:0.7~1:1.2 • 발파암 1:0.5~1:0.7 ※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 절토부 L형측구는 길어깨 폭원에 포함 ○ 성토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유효폭원 외부에 보호길어깨 0.5m를 설치
	성 토		
포장두께		표층 기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 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 -도로등급 및 교통량에 따라 설계등급 구분 적용 -한국형 포장설계 프로그램 활용 ○ 최소 포장두께 - 표 층 : 5cm - 기 층 : 10cm - 보조기층 : 10cm - 동상방지층: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8) ○ 동상방지층 두께는 노상에 포함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T=8cm (2회 포설)
횡단구성		• 총 폭 원 : 8.0m • 차 도 : 2@3.0=6.0m • 길 어 개 : 2@1.0=2.0m • 중앙분리대 : -	

◆ 리 도

◆ 설계속도 : 4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도 폭 : 5.0m - 길 어 개 : 0.75m - 측 대 : 0.25m ○ 최소곡선반경 : 60m ○ 최대종단경사 : 7%(16%) ○ 폭원은 현장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 수렴, 장래 개발 추이등을 고려하여 적용 ○ 연장이 긴 경우 현장여건에 맞추어 차량 교행을 위한 대기 공간 확보
	성 토		
포장두께		 콘크리트 포장 보조기층	○ 콘크리트 포장 (T=20cm) ○ 보조기층 (T=20cm) ※ 전후도로 연계성 및 기타여건을 고려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할 경우 별도로 두께 산정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 마모층 T=4cm(con'c)
횡단구성		• 총 폭 원 : 6.5m • 차 도 : 1@5.0=5.0m • 길 어 개 : 2@0.75=1.5m • 중앙분리대 : -	

◆ 농 도

◆ 설계속도 : 20km/hr

구 분		표 준 단 면	시 설 기 준
도 로 폭 원	절 토		○ 폭 원 기 준 - 차 도 폭 : 3.0m - 길 어 개 : 0.5m ○ 최소곡선반경 : 15m ○ 최급종단경사 : 8%(16%) ○ 폭원은 현장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 수렴, 장래 개발 추이등을 고려하여 적용 ○ 연장이 긴 경우 적정간격마다 차량 교행을 위한 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성 토		
포장두께		콘크리트 포장 보조기층	○ 콘크리트 포장 (T=20cm) ○ 보조기층 (T=20cm) ※ 전후도로 연계성 및 기타여건을 고려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할 경우 별도로 두께 산정
교량폭원			○ 토공부 폭원과 동일 ○ 난간 B=0.5m (유효 폭원에서 제외) ○ 교면 포장 : 마모층 T=4cm(con'c)
횡단구성		• 총 폭 원 : 4.0m • 차 도 : 1@3.0=3.0m • 길 어 개 : 2@0.5=1.0m • 중앙분리대 : -	